

<p>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: 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○내용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3,237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33,237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33,237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 ○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신정지구 중심지역으로서 중심지역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요구된 지역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: 10px auto;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76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: 강서구 등촌동 505, 648, 640 일대, 염창동 274 일대 ○내용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42,434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11,251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서구 등촌동 505, 648, 640 일대 및</p>	의안 번호	76	<p>염창동 274 일대 42,434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용도변경 예정지역 중 11,251㎡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</p> <p>○이 지역은 자치구에서 정한 등촌삼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○그러나 이 지역은 공항로 연변지역으로서 양천구 목동 606-18 일대도 생활권 중심지로 발전되어 있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목동지역도 준주거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: 10px auto;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77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: 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○내용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17,106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17,106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17,106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또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 ○이 지역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,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, 발전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	의안 번호	77
의안 번호	76				
의안 번호	77				